

# 養鷄產業安定對策

(採卵養鷄의 安定化方案)

吳鳳國·朴永寅

(서울대농대교수)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 目 次 附 表

- |                |                      |
|----------------|----------------------|
| I. 現況 및 問題의 提起 | 1. 濠洲의 Egg Board概要   |
| II. 安定目標       | 2. 뉴질랜드의 Egg Board概要 |
| III. 安定化方案     | 3. 日本의 卵價安定 方案       |
| 1. 生産調整        | 4. 규모별 양계사육 수수       |
| 2. 供給調整        | 5. 닭 규모별 사육추세        |
| 3. 消費促進        | 6. 닭 사육수와 계란가격       |
| 4. 調整機能遂行      |                      |
| 5. 總括          |                      |
| IV. 安定對策 및 建議  |                      |

### I. 現況 및 問題의 提起

1. 養鷄產業은 國民經濟發展 및 保健向上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 鷄產物은 畜產物生産額中 45.9%를 차지할 뿐 아니라 重要한 高級蛋白質 食品이다. —
2. 養鷄產業은 單位生産規模擴大—大量生産體制로 成長하고 있어 自給自足이 容易하며 오히려 供給過剩의 憂慮가 크다  
— 1978年末현재  
1,000首 이상 飼育農家 0.59%가 全体首數의 69.2% 飼育—

양계 사육 규모별 현황

규 모 별	사육농가수	비 율	사 육 수 수
1,000 이상	8,000 호	0.59%	69.2%
3,000 수 이상	3,548 호	0.26%	53.5%
10,000 수 이상	549 호	0.04%	23.5%

1978년말 가축통계 (축산진흥회)

3. 經濟發展과 더불어 鷄產物需要는 계속 增加될 展望이다—가장 값싼 畜產物이며 國際競爭力이 強함  
— 1978年 1人當 114개 消費에서 1991년에는 295개 消費豫想 —

4. 鷄卵의 商品性管理 및 流通이 前近代의이다.

— 商品標準化가 되어 있지 않고 供給調整 裝置가 없으며 流通 마아진 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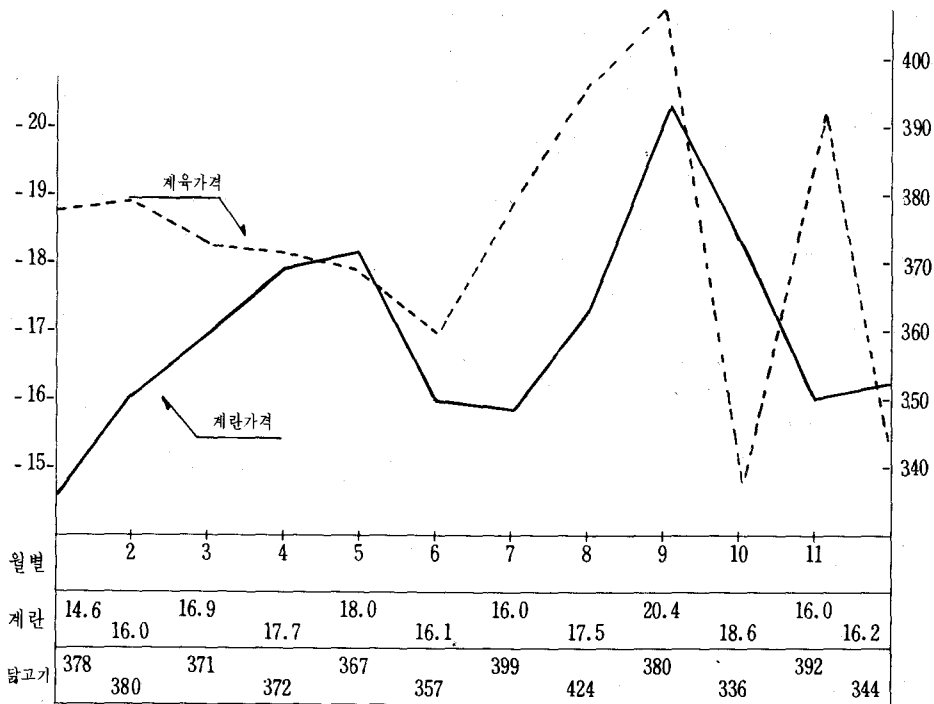
5. 生産量이 곧 供給量, 즉 需給調整對策이 없어 卵價의 季節的 騰落이 極甚 하여 生産者, 消費者 모두에게 不利益을 갖어다 준다.

— 지난 10年間(1969—1978)의 年間平均價格振幅은 39.7% —

6. 鷄卵의 生産, 流通, 消費에 걸치는 産業全體의 長期 發展 綜合調整 機構가 없다.

— 急速히 成長하는 經濟下에서 綜合發展對策 缺如로 産業이 不安定하다.

계란 및 계육 월별 평균가격 (1969—1978)



## II. 安定目標

### 1. 價格安定

1) 生産者價格保障—生産者所得安定 및 生産性向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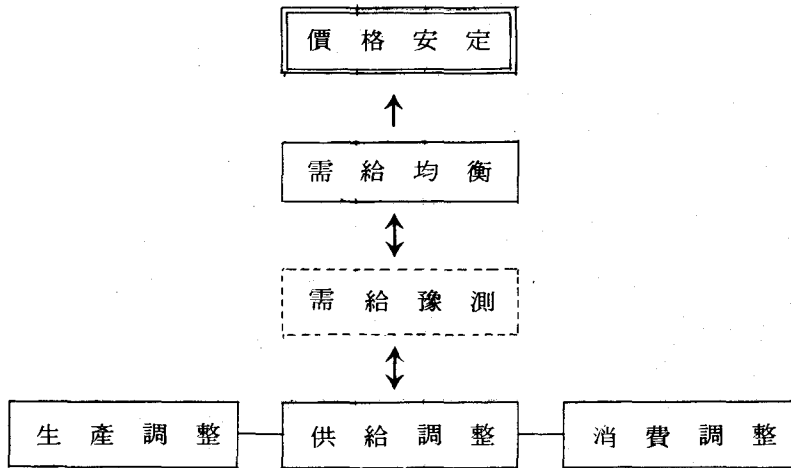


2) 消費者價格安定—合理的 家計 및 國民保健向上

2. 需給調整

- 1) 生産調整—國內需要에 適合하게 生産調整
- 2) 流通能率向上一流通近代化 및 需給量調整
- 3) 消費合理化—適定消費에 의한 消費者 保護

Ⅲ. 安定化方案



1. 生産調整

1) 孵化場 및 種鷄場의 規制強化

一定基準未達 부화장 및 종계장을 年次的으로 整理하여 병아리生産能率向上 및 數量調整

2) 生産量調節

① 飼育者數制限—登録制實施(自律的制限)

一定時點의 1,000首 以上 飼育者를 登録케하여 “鷄卵飼育者”로 지정하고 그後의 新規登録에 의한 飼育者指定 制限, 또는 登録農家에 대한 保護를 한다.

② 生産量割當

需給豫測에 따라 指定飼育者制, 期間別 生産量 增減割當, 또는 飼育首數의 增減

3) 生産地域 集中化 및 系列化

① 地域別團地化

効率의 生産調節을 위하여 生産의 團地化 促求

② 系列化

團地別로 協業體, 協同組合, 關聯業體(孵化, 飼料, 流通等) 등이 主體가 되는 系列化 生産 促求

4) 生産調整에 따른 保護 및 處罰

關聯該當者는 最低價格保障, 금융, 稅制上의 惠擇등을 통하여 適正保護하며 違反者는 適宜處罰

2. 供給調整

1) 商品性向上(長期的 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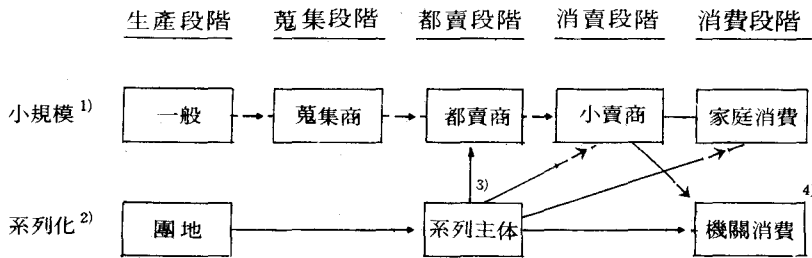
衛生的處理, 等級化, 包裝, 價格表示, 保管技術開發等

2) 製品開發

鮮卵, 液卵, 凍卵, 乾卵, 粉卵等

能率의 流通—自由市場體制

① 流通經路의 單純化



註：1) 1,000首 以下 飼育

2) 1,000首 以上 飼育

3) 直營近代化 小賣店, 家庭配達 또는 수퍼마켓, 專門店과의 契約에 의한 小賣

4) 食品加工業體, 料食業所, 기타 大量消費處

② 流通効率增大

鷄卵流通에 관련되는 모든 機能을 專門化하여 削減

4) 需給調整

① 需給豫測을 基準한 需給調整

② 需給調整에도 불구하고 供給過剩으로 最低價格까지 下落할 때는 系



列組織을 통하여 最低價格으로 買上保管

- ③ 供給不足으로 最高價格까지 上昇할 때는 買上保管分 放出 또는 輸入에 의하여 價格安定
- ④ 買上保管鷄卵은 國內販賣促進 또는 輸出

### 3. 消費促進

- 1) 消費者教育—營養, 料理 등
- 2) 用途開發—새로운 製品別 用途 多樣化
- 3) 消費處開發—學校給食, 團體給食 등

### 4. 調整機能遂行

- 1) 生産調整—法制化
- 2) 調整基金 (Reserve Fund)

調整機能의 遂行結果에 대한 損失負擔 目的으로 調整基金設置— 모든 採卵鷄 配合飼料에 一定率 賦課徵收

#### 3) 價格查定

生産者, 政府 및 關聯部門專門家로 構成하는 “卵價查定委員會”에서 一定期間別로 最高 및 最低價格 決定

#### 4) 專擔機構

- ① 性格—法定鷄卵取級 專門機構
- ② 機能—本案 “Ⅲ, 安定化方案”에 의한 諸機能專擔
  - ㉠ 養鷄産業長期發展對策講究
  - ㉡ 需給豫測事業
  - ㉢ 生産調整—孵化場, 種鷄場, 飼育者, 生産量, 團地化, 系列化, 保護 및 處罰機能
  - ㉣ 供給調整—商品性向上, 製品開發, 流通開發 需給調整, 買上, 保管, 處分, 輸出入獨點등 機能
  - ㉤ 消費促進—需要開發, 消費者教育 消費調整
  - ㉥ 調定基金造成 및 管理
  - ㉦ 生産者, 消費者 價格查定, 施行

#### ③ 運營

- ㉠ 關聯諸部門代表로 構成하는 政策決定機關(理事會)과 實際運營機關(執行部)에 의하여 機能遂行
- ㉡ 財政 및 金融資金으로 運營

- ㉓ 運營結果의 損益은 調定基金計定을 통하여 調整
- ㉔ 關聯既存機關(政府, 農協, 畜振, 養鷄協會等)의 機能 및 施設을 最大限 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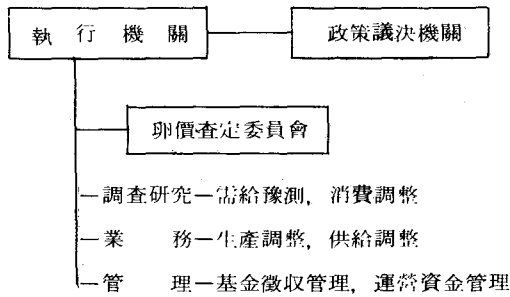
④ 設置

㉑ 獨立專擔機構로 新設

- 名稱 — Egg Board  
 鷄卵事業團  
 鷄卵公社  
 鷄卵公團, 등

또는 ㉒ 既存關聯機關內에 獨立機構로 附設했다가 品目別 專擔 機構가 設置될 때 分離,

例: 畜產振興會內에 Egg Board 部署新設



생산조정 기능

안정대책 \ 항목	시	장	공	급	가	격	비	고
안정기금	○		○	◎	○	◎	란	가 보 상
계란보관	○		○	◎	○	◎	공	급 조 정
란액공사	○	◎	○		○		수	요 조 정
생산조정	○	◎	○	◎		◎	생	산 활 당(호주) 자 율 적 조 정(일본)
수출입조정	○	◎	○	◎	○	◎	彈	力 관 세(일본) 수 출 보 상(호주)

○ 일본    ◎ 호주

IV. 總 括

養鷄產業 安定化 方案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1. 最低價格 保障制度
  - 基金造成：生產者 積立
  - 最低價 以下水準인 경우 卵價 補償
2. 市場流通의 需給 調整
  - 新鮮卵 保管制度—短期調整
  - 加工保管—長期調整
3. 生產調整
  - 飼育者 登錄 許可制
  - 飼育首數의 增減 割當劑
4. 輸出入 調整
  - 輸入制限—彈力關稅適用
  - 輸入赤字 補償
5. 調整機關 設立
  - Egg Board
  - 畜產振興會, 農協, 養鷄協會

### V. 安定對策 및 建議

養鷄產業의 長期的 安定發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對策을 建議함.

1. 前記 “Ⅲ, 安定化方案”을 實現할 수 있도록 適切한 法的, 行政的 措置講究.
2. 孵化場, 種鷄場, 指定飼育者의 生產調整對策 參與를 法的으로 義務化
3. 生產 및 流通의 系列化促進을 위한 行政的 措置講究
4. 採卵鷄飼育者의 配合飼料에 一定率의 調整 基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도록 措置
5. 前項 2.3.4 및 流通, 消費調整業務를 總括할 專擔機構의 設置運營法制化

<p>정확하고 신속한 대한양계협회</p>	<h1>시세속보</h1>
----------------------------	---------------

## 附 表

### 濠洲 Egg Board 概要

—資料：Rural industry in australia, 1975—

生産調節：州政府法에 의한 法定生産調節，  
産卵鷄許可制 (hen licensing)

流通調節：州Egg Board: 1. 鷄卵流通을 管營하는 州法에 의해 設立  
2. 目的：均等價格(equalized prices) 실현  
3. 모든 鷄卵은 의무적으로 Board에 판매해야 함.  
단, 일부생산자에게는 直販免許 주고 있음  
4. 州內鷄卵都賣價格은 Board가 決定.  
단, 州間去來分에 대해서는 無關

聯邦Egg Board: 1. 연방政府가 輸出鷄卵(全生産量의 약 20%)을 取  
級하는 單一機關으로 설립  
2. 會員 9 명：연방정부대표 1 (회장)  
계란유통업자 1  
전문가 1  
州Egg Board 6  
3. 國內需要超過分을 Egg Board로 부터 買入  
政府指定價格  
정부保證下에 中央銀行資金 借入活用 polling  
州Egg Board시설이용—정부輸出檢査  
4. 輸出價格은 國內價보다 크게 下廻

養鷄産業信託基金：聯邦政府內에 産業安定을 目的으로 設置

1. 정부지정生産者團體—Central Egg Marketing  
Authority (CEMA)  
(각州Egg Board로 구성된  
任意團體)
2. CEMA發議로 1965 年에 産業安定을 法定化—
  - ① 20 首 이상의 採卵業者에게 賦課金 또는 會費  
(levy) 負擔케 함—種卵은 除外
  - ② 賦課額은 CEMA와 政府가 결정





③ 賦課金은 2 週마다 징수하되 年首當約 \$ 1

초과치 못함

3. 州Egg Board가 징수한 賦課金은 政府의 信託基金化

4. 信託基金은 輸出損失보전, 行政費 調査研究費 등에 活用

**뉴질랜드의 예 :**

1924 年, 養鷄法 制定(主로 鷄卵)

가) 소매가격 고정(1 個月에 1 回씩 조정)

나) 운영위원설치 (다수의 생산자와 정부 소비자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고 가격사정 업무를 수행)

다) Board가 소비자 가격을 고시

라) 도매상(유통 관여자)은 모두 허가제이며 마진도 Board가 정해준다.

마) 1933년 쿼타제도 도입

바) Board는 현물 취급은 하지 않는다.

사) Board가 계란 수출 손실금을 보상하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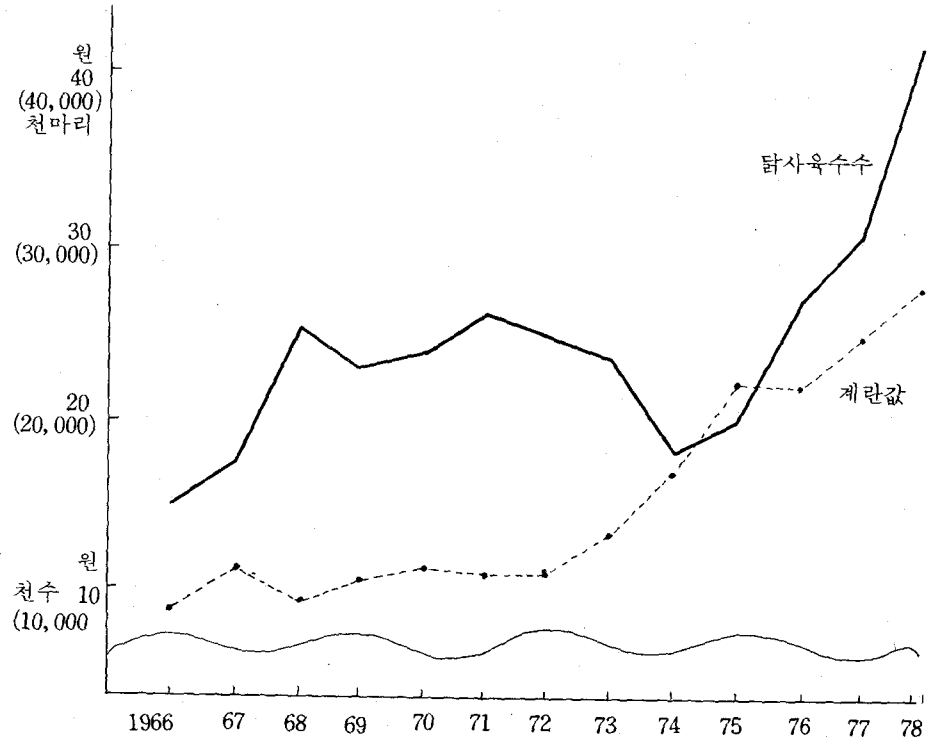
**日本の 例 :**

**일본의 난가안정대책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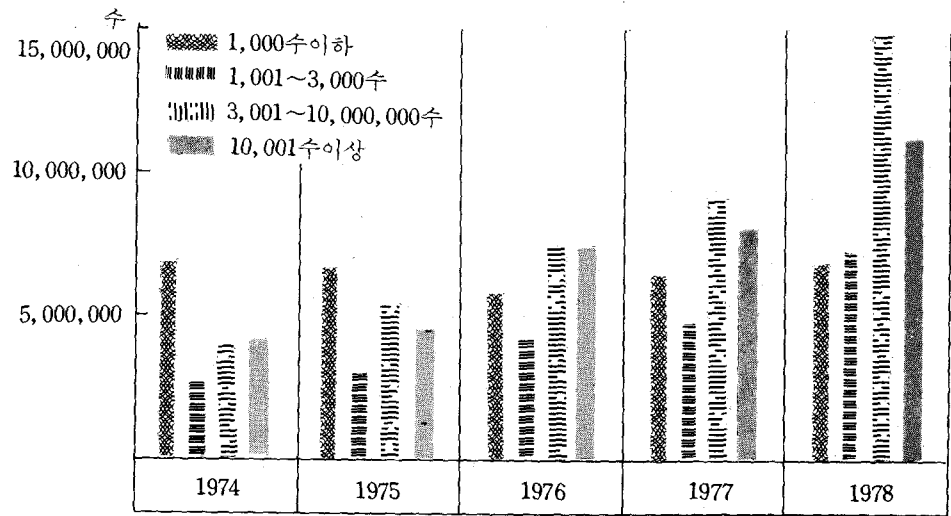
안정대책	내 용
1. 난가안정기금	(1) 생산자가 적립한 돈을 기금으로 하여 난가가 기준보다 하락되었을 때 이 돈으로 가격차액을 보전하여준다. (2) 과잉출하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관한 계란에 대한 손해액을 보전하여 준다. (3) 1975년 이후 난가 보전 계약에 「생산자는 생산조정에 협조」 한다는 확약을 받은 농가에게만 적용
2. 조정보관사업	난가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가격보다 하락이 되었을 때 계란의 조정을 위하여 보관사업을 개시한다(신선란으로서 냉장 보관하며 주로 일시적 또는 계절적 가격변동을 조정)
3. 난 액 공 사	난가가 장기적으로 폭락될 경우 구매를하며 난액으로서 냉동 저장한다. 또는 난가안정기금의 재정적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실시한다.
4. 생 산 조 절	1972년부터 정부의 행정지도로 생산자의 자율적 규제에 따라 1974 年 이후 일정규모(3,000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증수와 규모확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한다.
5. 수 입 정 책	1972년에 액란수입의 수입량조절과 수입관세율의 인상 조치를 취하여 수입을 억제하여 생산자를 보호토록 한다.



닭사육수수와 계란값의 변천



닭 규모별 사육후세



난가 안정 대책과 유통관계

항목	시장활용 시장통제	시장개입 시장불개입	수요조정 공급조정	비 고
안정대책				
난가안정기금	(시장활용)	불 개 입	—	난가보전
조 정 보 관	시장활용	개 입	공급조정	직접공급조정
난 액 공 사	시장활용	개 입	수요조정 (공급조정)	직접수요조정
생 산 조 절	시장활용	개 입	공급조정	생산조정 (계획생산)
수 입 정 책	시장활용	(개 입)	공급조정	수입량조정 (관 세 율)

닭 규모별 사육수수

年 度	總首數	10首以下		11~50		51~100		101~500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1960	12,030	5,105	42.5	3,518	29.2	1,136	9.4	1,450	12.1
1961	11,218	5,370	47.8	2,949	26.3	761	6.8	1,279	11.4
1962	13,216	5,789	43.9	3,607	27.3	1,061	8.0	1,947	14.7
1963	11,908	5,917	49.7	3,109	26.1	768	6.4	1,311	11.0
1964	10,282	5,913	57.5	2,279	22.2	489	4.8	886	8.6
1965	11,893	5,990	50.4	2,579	21.7	727	6.1	1,525	12.8
1966	14,008	5,808	41.5	3,135	22.4	1,108	7.9	2,467	17.6
1967	17,079	5,787	34.0	3,819	22.4	1,629	9.5	3,531	20.6
1974	18,814	5,178	27.6	366	1.9	94	0.4	595	3.2
1975	20,939	5,816	27.8	—	—	66	0.3	413	1.9
1976	26,325	—	—	—	—	472	1.8	675	2.6
1977	30,224	—	—	—	—	331	1.1	555	1.8
1978	40,753	—	—	—	—	374	0.9	520	1.3

年度	501~1,000		1,001~2,000 (1,000以上)		2,001~2,001		3,001~5,000		5,001~10,000		10,000以上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首 數	比 率
1960	416	3.5	405	3.3	—	—	—	—	—	—	—	—
1961	367	3.3	492	4.4	—	—	—	—	—	—	—	—
1962	391	2.9	421	3.2	—	—	—	—	—	—	—	—
1963	367	3.1	435	3.7	—	—	—	—	—	—	—	—
1964	303	2.9	412	4.0	—	—	—	—	—	—	—	—
1965	483	4.1	589	4.9	—	—	—	—	—	—	—	—
1966	608	4.3	881	0.3	—	—	—	—	—	—	—	—
1967	894	5.2	1,419	8.3	—	—	—	—	—	—	—	—
1974	956	5.1	1,575	8.4	1,454	7.7	2,082	11.1	2,125	11.3	4,389	23.3
1975	924	4.4	1,915	9.2	1,609	7.7	2,601	12.4	2,800	13.4	4,795	22.9
1976	991	3.8	2,201	8.4	2,141	8.1	3,551	13.5	4,553	17.3	8,049	30.6
1977	1,255	4.1	2,738	9.1	2,555	8.5	4,408	14.6	5,367	17.8	8,538	28.2
1978	1,371	3.4	3,664	9.0	3,831	9.4	6,618	16.2	8,138	20.0	11,177	27.4